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지원계획 동의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8월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안사유

○ 성주교육청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 학습장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,100백만원 예산 확보함.

○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교부 산출근거에 지역교육지수(20%)가 포함됨에 따라 성주교육청에서 우리군에 일부 운영비 지원을 요청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영어체험학습운영비 지원의 필요성

○ 지역인재 양성 및 인구 유입 기대

○ 지역교육청의 영어센터 건립 예산확보로 우리군 부담 경감

- **일부 운영비 지원 요청** ☛ 협약서 참조

○ 적은 비용으로 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 가능

나.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확보방안

○ 부동산교부세 중 교육지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

⇨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 가능

○ 성주군 - 성주교육청간 『성주 영어체험학습센터』 운영협약 체결 시 도교육청의 대응 투자유도 가능

○ 현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른 예산 지원 기대

※ 영어학습센터는 군, 교육청의 협약서 체결 후 착공

3. 기대효과

○ 영어관련 교육수요 충족 및 계층간의 영어능력 격차 해소

○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지역 인재 육성

○ 지역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및 인구유입 기대

붙임 : 협약서 1부. 끝.

성주군 ⇔ 경상북도성주교육청

『성주 영어체험센터』 운영 협약서(안)

성주군, 경상북도성주교육청(이하 "성주교육청"이라 한다)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와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성주지역 내 초·중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과 성주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의 목적은 성주 영어체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성주군, 성주교육청간의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성주군, 성주교육청간의 상호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성주군은 성주 영어체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.
2. 성주교육청은 초·중 영어체험 활동 운영을 책임진다.
3. 기타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해 상호 협의한 사항을 준수한다.

제3조(세부사항)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효력) 본 협약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,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본 협약의 내용을 상호간에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9. 8. .

성 주 군 청	**경상북도성주교육청**
군수	**교육장**